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6. 8. 29.  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6.8.22. 김윤정 의원 외 8명
- 나. 회부일자 : 2016.8.22.
- 다. 상정일자 : 제20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16.8.29.)  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김윤정 의원

### 가. 제안이유

부모 등 보호자가 없는 보호대상아동 문제 논의 등 아동보호를 위한 심의·의결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,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목적, 위원회 설치 및 구성(안 제1조, 제2조)
- 2)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, 위원의 임기, 위원장의 직무 등(안 제3조 ~ 제9조)
- 3)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우선조치, 자료제출의 요구 등(안 제10조, 제11조)
- 4)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간사, 회의록, 수당, 비밀유지의 의무, 운영세칙 (안 제12조~제16조)

### 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- 조례안은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,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,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목적과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, 위원회의 기능,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위촉 해제, 우선조치 사항과 자료의 제출 요구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음.
- 「아동복지법」 제4조 등에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·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·집행하여야 하고,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에 대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였으며, 또한 법 제12조에서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,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 제13조에 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 : 없음